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 9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 ○ 성주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장 이용객들의 증가가 예상되며 전통시장 최대 불편사항인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식 건물을 건립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활성화 유도

2. 주요내용
 ○ 사업개요
 - 위 치 :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718-325번지
 - 규 모 : 부지면적 1,939㎡ 건축규모 3,300㎡(연면적)
 - 진출입로 :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718-204번지 외 4필지 239㎡
 - 주차면수 : 총135면 (1층 48, 2층 39, 3층 48)
 - 사업기간 : 2015년 5월 ~ 2016년 6월
 - 사 업 비 : 총 2,500,000천원(국비 1,500,000천원, 군비 1,000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세부사업내용	사업량	사업비부담			비고
			계	국비	군비	
변경	주차장식 건축물	1식	2,287,080	1,372,250	914,830	
	진출입로 부지 매입비	5필지	212,920	127,750	85,170	
	합 계		2,500,000	1,500,000	1,000,000	

○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

- 2014. 3월 : 주차장부지 기 확보
- 2015. 4월 : 진출입로 부지감정 및 협의
- 2015. 8월 : 성주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발주
- 2015. 9월 :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(제2회 추경)
- 2015. 9월 : 진출입로 부지매입 및 기본·실시설계 용역
- 2015. 11월 : 공사 발주 및 착공
- 2016. 6월 : 완공 및 주차장 가동

○ 기대효과

- 성주시가지내 도로망이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전통시장 일대에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았으나 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
- 성주시장 현대화사업의 완료로 이용객들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맞춰 주차장식 건물을 건립하여 이용객들의 주차문제 해결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

3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

○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